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1. 개정이유

- 「IPO·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25.1.21,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로서 투자자 보호 및 저성과 기업의 적시·적절한 퇴출 등을 위한 진입·퇴출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강화 관련 절차 등 개선(제49조, 제51조, 별표 10)
 - 매출액 기준 미달시 시가총액 확인을 위한 절차 정비 및 시가총액 산정방식 개선, 관리종목 지정 해제 시기 관련 문구 정비
-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관련 절차 정비(제59조, 제60조의2)
 -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에 대한 상장폐지 유예 제도 관련 감사인 의견서 서식 마련
 - 2년 차 감사보고서 제출시에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관련 조항이 적용되도록 정비

☐ 실질심사 등 심의단계 축소에 따른 조문 정비(제62조, 제63조)

○ 실질심사 절차가 2심제로 축소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상장 요건 중 계속사업이익 조정에 대한 세부 내용 마련(제26조, 제75조)

○ 상장 요건 중 하나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산정 시 기업 계속성과 무관한 금융부채평가손실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 마련

3. 참고사항

☐ 심사등 : 리스크관리부 심사완료 (심사연번호 : 제25-107호)

☐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전단 중 “상장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원회”라 한다)”를 “상장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시장위원회”를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사목 단서 및 아목 단서 중 “제56조제1항제3호아목”을 각각 “제5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규정 제28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 “세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심사청구 전 거래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종류주식의 전환에 따른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이 별지 제43호의 서식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별지 제43호 서식의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 확인서에 따른 조정된 재무내용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제1호마목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각각 “제56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각 목”을 “제56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제53조제1항제1호나목1)·2)의 매출액 미달 사유에서”를 “제5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로, “연구개발·시장평가”를 “연구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최근 사업연도 기간 중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일을 제외한 거래일의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51조제1호를 준용한다.

제5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9조제3항 중 “제54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를 “제54조제1항제1호·제1호의2나목·제6호·제7호”로 한다.

제60조제13항제1호나목 중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을 “제56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상장폐지의 유예) ① 규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인의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의 의견서”라 한다)는 해당 감사인이 별지 제31호의2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규정 제55

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상장법인이 감사인의 의견서를 규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를 유예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소는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6조제1항제3호 각 목”을 “제56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제5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제56조제1항제3호하목”을 각각 “제56조제1항제16호”로, “제56조제1항제3호거목”을 각각 “제56조제1항제17호”로, “제56조제1항제3호너목”을 각각 “제56조제1항제18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56조제1항제3호파목”을 “제56조제1항제15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56조제1항제3호하목”을 “제56조제1항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을 “제5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6조제1항제3호다목”을 “제5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56조제1항제3호파목부터 너목까지”를 “제56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6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56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2) 중 “제5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1)·2)”를 “제5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기술성장기업 또는 이익미실현기업”을 “기업”으로 하며, 같은 목 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6조제1항제3호바목”를 “제5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56조제1항제3호사목1)”을 “제56조제1항제9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6조제1항제3호자목”을 “제56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을 각각 “제56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56조제1항제3호하목”을 “제56조제1항제1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을 각각 “각 목 및 제3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6조제1항제3호 각 목”을 “제56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6조제1항제3호파목부터 너목까지”를 “제56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6조제1항제3호파목·하목”을 “제56조제1항제15호·제16호”로 한다.

이 경우 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다목의 “최근 사업연도”는 “최근 분기” 또는 “최근 반기”로 본다.

제6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항 단서”로, “각 1년”을 “1년”으로, “없으며,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한 개선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총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를 “없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 및 제1호·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이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이 항 본문을 준용한다.

1.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등 개선계획의 중요 부분에 대한 이행이 있을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개선계획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판결·결정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3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위원회는 제6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이 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7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 ① 규정 제7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세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제26조제2항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제2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별표 10 제1호1)의 해제시기란 본문 중 “30억원”을 “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의 기준 매출액”으로 하고, 같은 란 단서 중 “제53조제1항제1호나목1) 또는 2)의 어느 하나”를 “제53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 5)의 해제시기란 중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을 “규정 제54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상태가 10일”로,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을 “규정 제54조제1항제12호나목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일수가 30일”로 한다.

별표 14 제4호가목1) 중 “제56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56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제3호 표의 매출액란 다음에 기업가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주1) 중 “큰 경우”를 “크거나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을 고려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권비상장법인등의 기업가치가 당사보다 큰 경우”로 한다.

기업가치

별지 제29호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 서식을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 제61조제1항제4호라목, 별표 10 제1호1), 별지 제29호, 별지 제31호의2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질심사 절차 개선 관련 적용례) 제62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규정 제57조제3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보통주식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상품 평가손실 관련 적용례) 제26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 또는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제2호 중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을 “제5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 단서 중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을 “제5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을 “제5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을

“제5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단서 중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을 “제5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18조의2 단서 중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을 “제5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을 “제5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별지 1>

[별지 제29호 서식]

연구개발 우수기업 확인서

(세칙 제49조제2항 관련)

한국거래소 이사장 귀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같은 규정 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확인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 다 음 -

1. 연구개발 우수기업에 관한 사항

제약·바이오기업 해당 여부 ^{주1)} (○, X)	혁신형 제약기업 해당 여부 ^{주2)} (○, X)	혁신형 제약기업 유효기간

주1) 규정 제2조제1항제40호에 따른 제약·바이오기업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주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2. 첨부서류

구 분	첨부여부 (○,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사본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별지 2>

[별지 제31호의2 서식]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 해소 관련 확인서

(세칙 제60조의2 관련)

한국거래소 이사장 귀하

본 감사인은 ○○○(주)의 2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유로 부적정(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동 부적정(의견거절) 감사의견 표명 사유는 전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 이후 ○○○(주)의 회생계획 인가(또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에 따라 회생(또는 워크아웃) 절차 종료 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의 사유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당초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사유
2. 사유 해소 가능성에 대한 이유(인가된 회생계획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3. 사유 해소에 대한 근거 자료 : 별첨

○○시(도) ○○구(시군) ○○동 ○○번지

○○○회계법인

대표 (인)

년 월 일

<별지 3>

[별지 제43호 서식]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 확인서

(세칙 제26조 및 제75조 관련)

한국거래소 이사장 귀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및 제75조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이 20XX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같은 규정 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등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구 분	금 액(원)
조정 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주1)} (a)	
금융상품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평가손실 ^{주1)} (b)	
조정 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주2)주3)} (c)	

주1) (a)는 손실 금액은 그대로 (-)로 기재하고, (b)의 평가손실액은 절대값을 기재

주2) (c) = (a)+(b) 로 계산

주3) 조정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형식적 심사요건으로 적용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
대표 (인)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10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 ① (생략) ② 규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u>상장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일정 등을 고려할 때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상장위원회 개최일까지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경우.</u> 이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5. (생략) 제14조(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① (생략)	제10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상장위원회</u>----- ----- ----- ----- ----- -----. ----- -----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u>시장위원회</u>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상장신청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1회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9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등) ① 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의 계산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의 시장의 매매거래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 · 2. (생략) 3. 규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② ----- ----- ----- -----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원회"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등) ①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조문 정비
---	---	------------------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 바. (생략) 사. 규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 장적격성 실질심사 사 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상장적 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 한 날부터 규정 제57 조제1항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 날까 지. 다만, 규정 제56조 제1항제3호아목의 분 할 또는 분할합병의 취소 결의·결정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취 소 결의·결정일까지로 한다.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 ----- -----: ----- ----- ----- ----- ----- ----- -----제56조 제1항제10호----- ----- ----- ----- -----.	인용조문 정비
아. 사목에 따라 상장적 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날부 터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 날까지. 다만,	아. ----- ----- -----: ----- ----- ----- -----.	인용조문 정비

규정 제56조제1항제3 호아목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취소 결 의·결정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취소 결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자. ~ 타.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6조(형식적 심사요건의 적용방법) ① (생 략) <신 설>	-----제56조제1항제1 0호----- ----- ----- ----- -----. 자. ~ 타.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형식적 심사요건의 적용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정 제28조제1항제2 호가목1)에서 “세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란 심사청구 전 거래소 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종 류주식의 전환에 따른 금 융상품 관련 평가손실이 별지 제43호의 서식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계 속사업이익은 별지 제43 호 서식의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 확인서에 따른 조정된 재무내용을 적용 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계속 사업이익 조정 관련 세칙 위임사항 * 관련하여 별지 제43호 서식 신설
② ~ ⑤ (생 략)		

제33조(우회상장 심사요건
적용방법) ① · ② (생
략)

③ 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질적 심사요건 중 규
정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영업의 현저한
악화 등 거래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1.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우회상
장 대상 법인이 국민경
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자금조달 기능을 해치
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
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가. ~ 라. (생략)

마. 주요사항보고서 제
출일을 기준으로 최

제33조(우회상장 심사요건
적용방법)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인용조문
정비

근 2년 이내에 규정 <u>제56조 제1항 제3호</u>의 사유에 따른 상장적 격성 실질심사 대상 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을 것	----- <u>제56조 제1항 각 호</u>----- ----- ----- ----- -----	
2.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보통주 식 상장법인이 주요사 항보고서 제출일을 기 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에 규정 <u>제56조 제1항 제 3호</u>의 사유에 따른 상 장적격성 실질심사 대 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 ----- ----- ----- ----- ----- <u>제56조 제1항</u> <u>각 호</u>----- ----- ----- -----	인용조문 정비
가. ~ 마. (생략) 제48조(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생 략) ② 기업부실위험 선정기 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생략) 2. 지정일 전일 현재 규 정 제54조의 형식적 상	가. ~ 마. (현행과 같음) 제48조(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인용조문 정비

장폐지사유(규정 제54조제1항제5호의 주식분산 미달, 규정 제54조제1항제8호의 주식양도 제한, 규정 제54조제1항제11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였거나, 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을 것	----- ----- ----- ----- ----- ----- -----제56조제1항 각 호----- -----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매출액 미달 사유 등의 적용방법) ① (생략)	제49조(매출액 미달 사유 등의 적용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나목1)·2)의 매출액 미달 사유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확인서는 각 사	② ----제5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연구개발----- ----- ----- ----- ----- ----- ----- ----- -----	혁신형 제약기업 확인 절차로 정비 * 관련하여 별지 제29호 서식 수정

업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감사보고서 제출일 이전으로 한정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u><신 설></u>	<u>③ 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최근 사업연도 기간 중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일을 제외한 거래일의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51조제1호를 준용한다.</u>	일평균 시가총액 산정 방법
<u>③ ~ ⑥ (생략)</u> 제51조(시가총액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규정 제53조제1항제5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u>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u> 제51조(시가총액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 ----- ----- -----.	
1. (생략) 2. <u>유상증자·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권리락 및 배당락</u>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시가총액 산정에 불필요한 내용

<u>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u>		삭제
제59조(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① · ② (생략)	제59조(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하여 규정 <u>제54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u>에 따른 해당 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에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 ----- ----- ----- ----- ----- -----<u>제54조제1항제1호·제1호의2나목·제6호·제7호</u>----- ----- ----- -----.	인용조문 정비
제60조(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 ⑫ (생략)	제60조(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규정 제55조제4항에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⑬ ----- ----- ----- ----- ----- -----	

다. 1. 규정 제54조제1항제1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략) 나.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여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생략) <신설>	--. 1.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제56조제1항제13호----- ----- ----- 2.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상장폐지의 유예) ① 규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인의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u>감사인의 의견서</u>”라 한다)는 해당 감사인이 별지 제31호의2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인용조문 정비 감사인 의견서 서식 신설
--	---	---

	<u>②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규정 제5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u> <u>③ 상장법인이 감사인의 의견서를 규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를 유예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소는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u>	의견서 제출시 기심위 개최 기한 설정
		의견서 미제출 등의 경우 상장폐지 절차 진행
제61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적용방법) ①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제61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적용방법) ① ----- 제56조제1항 각 호----- ----- ----- -----.	인용조문 정비
1.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 <u>가목</u> 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1. ----제56조제1항제3호 ----- ----- -----:	인용조문 정비

가. -----

----- 제56조 제1항 제16
호-----

----- 제56조 제1항 제17호-----
----- 제56조 제1
항 제18호-----

나. -----

---- 제 56조 제 1 항 제 16
호-----

---- 제 56조 제 1 항 제 17
호----- 제 56조 제
1 항 제 18 호-----

의 자기자본 미달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임의적·일시적 매출로 규정 <u>제56조제1항제3호파목</u>의 매출액 미달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분할 또는 사업부 매각 등을 중단사업으로 회계처리하여 규정 <u>제56조제1항제3호하목</u>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생략) 2. 규정 <u>제56조제1항제3호나목</u>에 따른 횡령·배임 사실의 공시 등: 공시규정 <u>제6조제1항제2호라목(6)</u>에 해당하는 규모(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 ----- 다. ----- -----<u>제56조제1항제15호</u>----- ----- ----- 라. ----- ----- -----<u>제56조제1항제16호</u>----- ----- ----- ----- ----- ----- 마. (현행과 같음) 2. -----<u>제56조제1항제4호</u>----- -----:----- ----- ----- ----- ----- ----- ----- -----	인용조문 정비
--	--	--------------------

확인되는 경우	-----	
3.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외부감사 법 제5조제3항을 중대 하게 위반한 사실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으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3. ----제56조제1항제5호 ----- ----- -----: ----- ----- -----	인용조문 정비
가. 사업보고서, 사업보고 서의 정정, 검찰의 기 소내용, 증권선물위원 회의 감리결과 등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 실이 확인되고, 그 위 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규정 제54조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규정 제56조제1항제3 호과목부터 너목까지 의 규정에 따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가. ----- ----- ----- ----- ----- ----- ----- ----- ----- -----제56조제1항제1 5호부터 제18호까지-- ----- ----- -----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4.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른 주된 영업 정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 잔	4. ----제56조제1항제6호 ----- -----: -----	인용조문 정비

여 사업부문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된 영업을 판단하되,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 ~ 다. (생략)

라. 최근 분기의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반기의 매출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생략)

2) 규정 제5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1)·2)에 따라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기술성장기업 또는 이익미실현기업 <후단 신설>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1) (현행과 같음)

2) -----제5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기업.
이 경우 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다목의 “최근 사업연도”는 “최근

인용조문
정비

3) (생략) 마. ~ 사. (생략) 5.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손상차손: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 에서 공시규정 제6조제 1항제2호라목(8)에 해당 하는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6.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 사목1)에 따른 경영권 변동: 공시규정 제6조제 1항제3호가목(1)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공시하거나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9) (가)에 따라 주식 양수 도 계약 또는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의 체결을 공시 하는 경우 7.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 자목에 따른 매출액 감 소: 최근 3개 사업연도	<u>분기</u>” 또는 “<u>최근 반 기</u>”로 본다. 3) (현행과 같음) 마. ~ 사. (현행과 같음) 5. ----제56조제1항제8호 -----: ----- ----- ----- ----- ----- ----- ----- 6. ----제56조제1항제9호 가목----- -: ----- ----- ----- ----- ----- ----- ----- ----- ----- 7. ----제56조제1항제11 호-----: ----- -----	인용조문 정비 인용조문 정비 인용조문 정비
---	---	--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하되, 상장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 ----- ----- ----- ----- -----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8.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 <u>차목</u>에 따른 공시 별점 부과: 최근 1년 이내에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 <u>차목</u>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발생한 별점을 합산하여 적용할 것	8. ----제56조제1항제12호-----: ----- 제56조제1항제12호----- ----- ----- ----- ----- -----	인용조문 정비
9.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 <u>하목</u>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42호 서식의 확인	9. ----제56조제1항제16호----- ----- ----- ----- -----	인용조문 정비

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통해 확인되는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말한다.

②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1. 규정 제56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

가. · 나. (생략)

2. 규정 제56조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

가. · 나. (생략)

3.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

가. ~ 마. (생략)

③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

-----.

② -----

-----.

1. -----
-----각 목 및
제3호 각 목-----

가. · 나. (현행과 같음)

2. -----
-----각 목 및
제3호 각 목-----

가. · 나. (현행과 같음)

3.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19호-----

가. ~ 마. (현행과 같음)

③ -----

하여 분할하였으나 지주 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는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파목부터 너목까지의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파목·하목의 사유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를 산입하지 않는다. 제62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① (생략) ② 규정 제5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57조제3항 본	----- ----- ----- ----- -----제56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 ④ ----- ----- ----- -----제56조제1항제15호·제16호----- ----- -----. 제62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3심제 관련 조항 삭제 인용 조문
--	---	--

문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u>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기간은 각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한 개선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총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u> 1. <u>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등 개선계획의 중요부분에 대한 이행이 있을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u> 2. <u>개선계획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판결·결정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u> ④ (생략)	----- -----<u>같은 항 단서</u>----- ----- ----- ----- -----1년 -----<u>없다.</u> <u><단서 삭제></u> <u><삭 제></u> <u><삭 제></u> ④ (현행과 같음)	정비 제5항으로 내용 이동
--	--	---

⑤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일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규정 제5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⑤ -----

 -----.

이 경우 개최하는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이 항 본문을 준용한다.

1.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등 개선계획의 중요부분에 대한 이행이 있을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개선계획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판결·결정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항에서
 위치
 이동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개최 기한 이후로 예정된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의 개최 기한을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 ----- ----- ----- -----제1항----- ----- ----- ----- ----- ----- -----.	인용 조문 정비
⑨ ~ ⑪ (생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63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① ~ ③ (생략)	제63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개선기간과 제62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부여한	④ ----- ----- ----- ----- ----- ----- ----- -----	제6항 으로 내용 이동

개선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총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u>이 경우 제6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u>	----- ----- -----, <u><후단 삭제></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에 따른 서류 제출일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⑥ ----- ----- ----- ----- ----- -----, <u>이 경우 개최하는 시장위원회는 제6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이 항 본문을 준용한다.</u>	4항에서 내용 이동
⑦ ~ ⑩ (생략) 제75조(합병상장 심사요건 등) <u><신설></u>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75조(합병상장 심사요건 등) ① <u>규정 제75조제1항 제1호가목에서 “세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제26조제2항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u>	계속 사업이익 조정 관련 세척 위임사항

① ~ ⑥ (생략)

⑦ 거래소는 규정 제7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합병상장신청인이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별표 10]

관리종목 지정·해제 시기

(세칙 제58조, 제69조, 제72조, 제80조 관련)

1. 보통주식, 외국주식등,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

지정 사유	지정 시기	해제 시기
1) 매출액 미달 (규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제1항)	감사보고서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	차기 감사보고서로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 다만, 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나목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말하며, 이 경우 제2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 ⑦ (현행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⑧ -----

-----제7항-----

-----.

[별표 10]

관리종목 지정·해제 시기

(세칙 제58조, 제69조, 제72조, 제80조 관련)

1. -----

지정 사유	지정 시기	해제 시기
1) ---- ----- ----- ----- ----- ----- ----- ----- -----	----- ----- ----- ----- ----- ----- ----- ----- -----	----- ----- ----- -----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의 기준 매출액----- ----- -----제53조 제1항제1호다목----- ----- ----- -----.

7) ~ 22) (생략)

7) ~ 22) (현행과 같음)

가. _____

부과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수수
료 및 연부과금

1)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
목에 해당하는 코스닥시
장 상장법인의 변경·추가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2) (생략)

나. ~ 카. (생략)

5. (생략)

[별지 제15호 서식]

합병 관련 확인서

(세칙 제32조 관련)

한국거래소

이사장 귀하

당사는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하 이 서식에서 “주권비상장법인등”이라 한다)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4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거래소가 코스닥시장 관련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등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1) ----- 제56조 제1항 제6호-

2) (현행과 같음)

나. ~ 카.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별표 제15호 서식]

합병 관련 확인서

(세칙 제32조 관련)

한국거래소

이사장 귀하

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합니다.

- 다 음 -

1. · 2. (생 략)

3. 주권비상장법인등의 규모가 당사보다 더 큰지 여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3. 주권비상장 법인등의 규모가 당사보다 더 큰지 여부 ^{주1)}	예, 아니오			
구분	자산 총계	자본 금	매출 액	
당사 ^{주2)}				<신설>
주권비상장법인등 ^{주2)}				

주1) 주권비상장법인등의 자산총계, 자본금, 매출액 중 2가지 이상이 당사보다 큰 경우 “예”로 기재

주2) (생 략)

4. ~ 6. (생 략)

-----.

- 다 음 -

1. · 2. (현행과 같음)

3. -----

(단위 : 원)

3. 주권비상장 법인등의 규모가 당사보다 더 큰지 여부 ^{주1)}	예, 아니오			
구분	자산 총계	자본 금	매출 액	기업 가치
당사 ^{주2)}				
주권비상장법인등 ^{주2)}				

주1) -----크
-----거나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을 고려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권비상장법인등의 기업가치가 당사보다 큰 경우 -----

주2)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